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6월 23일 김정기 의원 등 6인

나. 회부일자 : 2011년 6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1년 7월 12일) 상정 수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윤병국 의원)

□ 제안이유

- 부천시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훈련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생활체육회 소속 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과 각종 대회에 부천시 선수단의 상위입상을 도모하는 등 실질적인 훈련성과를 거두기 위함.

□ 주요내용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전액 감면대상자에 “부천시 생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중 시 대표팀으로 출전하는 선수의 훈련”을 신설함(안 제11조1항1호).
- 별표 3의 연습사용료 중 시 대표팀 선수의 실질적인 훈련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무상사용 기간을 대회별 1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안 별표 3).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없	음

4. 토론요지

- 부천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 및 아마구단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식경기는 전액 감면하고 연습경기는 100분의 50이하를 감면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167
의결 연월일	2011. 7. 12

제안년월일 : 2011년 7월 12일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부천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 및 아마구단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식경기는 전액 감면하고 연습경기는 100분의 50이하를 감면하도록 수정함.

2. 수정 주요골자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전액 감면대상자에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 및 아마 구단의 공식 경기”를 신설함(안 제11조제1항제1호)
-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100분의 50이하 감면대상에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 및 아마구단의 연습 경기”를 신설함(안 제11조제2항제5호).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의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 및 아마 구단의 공식 경기

제11조제1항제2호의 라목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의 마목을 라목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목을 마목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의 아목을 바목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 및 아마 구단의 연습경기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별표 2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전액 감면 가.~마. (생략) 《신설》</p> <p>2. 100분의 50 이하 감면 가. ~ 다. (생략) 라. <u>시를 연고로 하 는 프로 및 아마구 단의 공식 경기</u> 마. (생략) 사. (생략) 아. (생략)</p> <p>3. 100분의 30 이하 (현행과 같음)</p>	<p>제11조(사용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 가.~마. “현행과 같음” 바. <u>부천시 생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중 시 대표팀으로 출전하 는 선수의 훈련</u> 《신설》</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제11조(사용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 가.~마. (현행과 같 음) 바. (개정안과 같음)</p> <p><u>사.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 및 아마구단의 공식 경기</u></p> <p>2. (현행과 같음)</p> <p>가. ~ 다. (생략) <u>《삭제》</u></p> <p><u>라. (현행과 같음)</u> <u>마. (현행과 같음)</u> <u>바. (현행과 같음)</u></p> <p>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3의 체육시설 연습사용료를 100분의 50 이하로 감면할 수 있다.</p> <p>1.~4.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신설》</p>	<p>②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5. <u>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 및 아마구단의 연습 경기</u></p>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1항1호의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부천시 생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중 시 대표팀으로 출전하는 선수의 훈련

제11조제1항제1호의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 및 아마 구단의 공식 경기

제11조제1항제2호의 라목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의 마목을 라목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목을 마목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의 아목을 바목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 및 아마 구단의 연습경기
-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연습사용료(제8조관련)

(단위: 원)

경기장별	사용구분	기 준	1인당 사용료	
			개인	단체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1회 2시간	500	400
	보조운동장	1회 2시간		1팀 10,000
	체력단련장	1회 2시간	2,000	1,600
	야구연습장	1회 2시간	1,500	1팀 10,000
	인공암벽	1회 2시간	1,500	1,200
시민운동장	축구경기	1회 2시간		1팀 10,000
원미운동장	축구경기	1회 2시간		1팀 10,000
부천체육관	체육관	1회 2시간	2,500	2,000
	체력단련장	1회 2시간	2,000	1,600
	보조운동장	1회 2시간	1,500	1팀 10,000
송내사회체육관		1회 2시간	1,500	1,200
스포츠센터	체육관	1회 2시간	1,500	1,200
	체력단련장	1회 2시간	2,000	1,600
	수영장(1회)	일반	3,000	2,400
		청소년, 군인	2,500	2,000
		노인, 어린이	2,000	1,600
서촌다목적체육관		1회 2시간	1,000	800
테니스장	평일	1회 2시간	2,500	1면 10,000
	휴일	1회 2시간	3,500	1면 14,000
	평일 야간	1회 2시간		1면 15,000
	휴일 야간	1회 2시간		1면 21,000
공 도 장		1회 2시간	1,200	1,000

1.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와 오정레포츠센터 등을 말한다.
2. 단체사용료의 경우 축구경기 및 야구경기는 팀당으로, 테니스경기는 면당으로 각각 연습사용료를 계산하고, 그 밖에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3. 공휴일은 전용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전용사용 신청이 없는 경우 연습사용을 허용한다.
4. 월 사용료 = 1인당 사용료(개인) × 20일 (단, 테니스 월사용료는 30,000원)
5. 개인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 월 사용료 × 5배 이내
6. 시 대표팀 선수의 훈련을 위한 무상사용은 대회별 10일 이내로 한정한다.
7. 자원봉사 마일리지 실적(중포 표기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육시설 사용요금으로 인정한다.
8. 2명 이상 단체경기는 감면대상자가 경기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참가할 경우 감면한다.